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6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영치금 과세자료 확보	2

I. 개요

1.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6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2.
- (3) 회 부 일 : 2025. 5.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영치금 과세자료 확보(이병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자료의 제공 (제80조) <u>< 신 설 ></u>	☐ 수용자가 수용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국세청장은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수용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 ○ 교정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

* 이병진의원안 2025. 5. 2. 발의(의안번호 10369)

☐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수용자가 수용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 소위 영치금품¹⁾에 관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상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법령상 비과세²⁾되는 경우와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³⁾인

1)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보내준 돈, 또는 수용자가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교정시설에서 개설된 영치금 계좌에 보관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영치금품의 경우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법령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현실적으로는 국세청에서 관련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국세청은 영치금품에 대한 증여세 결정자료는 별도로 구분·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영치금품 수증자에 대한 과세현황은 파악되지 아니함.

□ 개정안은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금품을 수용자가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과세자료의 확보를 통해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취지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과세자료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기획재정부는 과세관청이 수용자의 실명계좌 보유재산은 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에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에도 증여추정⁴⁾을 통하여 과세가 가능하고, 영치금품의 경우 실명 전달 의무가 없어 차명·익명 전달 시 과세정보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6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